

대 학 평 의 회 회 의 록

회의 소집 통보 일자	2013.04.12(금)
의원 정수	출석의원 : 8명

1. 회의일시 : 2013년 4월 23일(화)

2. 회의장소 : 9동 2층 소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나. 불참의원 : 유완종, 박준성

4. 회의안건

가. 2012회계년도 교비결산(안)

나.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교비부담(안)

다. 학칙개정(안)

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5. 회의내용

(의장) “재적의원 11명중 8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포하다. 이어 제3대 대학평의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는 소회를 밝히고 3대 대학평의원들의 열의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지금부터 대학평의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제1안 2012회계년도 교비결산(안), 제2안 사학연금법정부담금 교비부담(안), 제3안 학칙개정(안)입니다. 회의종료 후에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의 추천감사 추천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2012회계년도 교비결산(안)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의 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완종) 안녕하십니까? 사무처 유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년도 대학 교비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 (의 장) 유완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한 2012회계년도 교비결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형)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결산서 19페이지를 보시면 기말유동자산과 기말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예산을 잡지 않고 결산에 잡힌 것가요?
- (이강서) 예, 예산과목은 아니고 운영과목인데 결산서에 명기하기 위해 추가되어진 부분입니다.
- (이강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158억으로 되어 있고..., 32억이 강의동 증축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이강서) 2012년 4월말 잔금지급 부분입니다.
- (이강오) 당초 강의동 증축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 (이강서) 총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강의동에 투입되는 기자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오)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 (이강서) 4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유완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5월 9일 준공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강오) 그러면 126억이 캠퍼스 조성준비금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학평가에서 이월자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되어 있나요?
- (이강서) 그 부분은 종전 이월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저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강의동 신축과 캠퍼스 이전 계획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 장)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차후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안 2012회계년도 교비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의원전원이 이의가 없음을 제청하다) 그러면 이어서 제2안 사학연금법정부담금 학교부담(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 김익진입니다. 지금부터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작년에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월 26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의 개정으로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다)

(김익진) 현재 전국 사립전문대학 108개중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100%를 충족하는 학교는 16개교에 불과하며 이 또한 임야 등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 대부분이므로 매년 세금 등 비용적인 부담만 감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상황에서 수익을 증대시켜 법인부담금을 전액 충족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대학법인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20%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년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최소한의 법인 운영비를 제외하고 대학에 전출하고 있으며 2012회계년도 신규 사업체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 약 7천여만원을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부담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는 바, 금번 2013~15년 법인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학교부담금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현범)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올라올 때 10%정도 증가되고 그 다음부터 3%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대학이 2015년이면 50%를 부담하는데 현재 108개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김익진) 현재 전문대를 기준으로 볼 때는 2억 정도를 부담하는 대학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법인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준)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본래 편성이 되 있었던 것인가요?

(김익진) 네,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의장) 그러면 예산안은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심의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김익진) 별도 안건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문대정책과 뿐만아니라 사립대학과와 같이 연계하여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요청 드린 것입니다.

(의장) 네, 잘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갖고 계신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안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학교부담(안)은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의원전원이 이의없음을 제청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3안 대학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안녕하십니까? 교무과장 이은석입니다. 지금부터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신구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칙개정(안)은 교무처의 하부조직 중에서 현재 운영하지 않는 학사제도팀, 외국어향상팀을 삭제하고 실습지원팀의 명칭을 현장실습지원팀으로 변경하여 팀 업무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대학의 전과제도를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자 학칙 제28조(전과)의 조항을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강사료지급규정에서 전임교원의 주당책임시수가 9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칙 제40조(교수시간)에서 전임교원의 주당책임시수를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개정하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칙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설명 감사합니다. 본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과에 대한 기준은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이은석) 전과에 대한 세부지침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학칙상의 전과제도를 통해 전과가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중도탈락 발생의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입학 후 전공 미스매칭에 대한 학업포기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국시관련 간호·보건계열 학과로의 전과는 원천적으로 힘들지만 그 외의 전공학과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통하여 선택의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학칙 개정(안)을 보면 ~는 별도로 정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 의해서 따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정
님교원, 초빙교원 이런 이런 부분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은석) 그 부분은 학칙상에 세부적으로 명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 규정인 초빙교원 규정이나 시간강사 규정 등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 (...) 오래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학칙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안 학칙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의원전원이 이의없음을 제청하다) 이어 의장은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3(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의거하여 의장 및 부의장, 의장이 지정하는 1인(현종구의원)으로 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법인요청 감사에 대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속개됨을 설명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18:05분 산회)

2013년 4월 23일

대전보건대학 대학평의원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종	박준성
										